#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48

발의연월일: 2025. 6. 2.

발 의 자:차규근·강경숙·신장식

용혜인 · 김준형 · 김재원

이해민 · 김선민 · 서왕진

한창민 · 정춘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	
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	
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	
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	
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하여 경영한 기업을 <u>말한다</u> . 이	<u>말하되, 「자본</u>
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	제외한다
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	
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 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 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 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 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 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⑧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형행과 같음)				